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934
----------	-----

발의연월일 : 2009. 11. 5.

발 의 자 : 유천호·박창규·오흥철

이명숙·정종섭·김소림 의원
(찬성자 4인)

제안이유

- 훈맹정음인 한글점자를 창안하여 시각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평생 몸 바치신 송암 박두성 선생의 문화사업과 유업을 기리기 위한 활동 등 시각장애인은 물론 시민들에게 선생의 위업을 높이 찬양하고 그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지원근거 마련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장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2조)
- 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안 제3조)
- 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참고내용

-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1부.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송암 박두성 선생의 업적 유품 등 연구, 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추진 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송암 박두성 선생 문화사업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박두성 선생의 유업을 기리는 출간사업 및 유물 수집 전시
2.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 조성 추진활동에 관한 사항
3.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 법령	<p>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보조금의 지원) -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p>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용어의 정의) <p>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4조(지원대상) - 제5조(지원범위)
관련 법규 정비 대상	
관련 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